

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2601
--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8. 21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정이유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3조)

다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계획 수립 규정(안 제4조)

라.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, 운영,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등

마.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
- 공영주차장,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

바.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 및 임대에 관한

사항 규정(안 제7조)

사. 충전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아.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·교육 및 경비 지원에 관한
사항 규정(안 제9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, 가족복지과-23500(2026.6.11.)호

라. 입법예고: 2026. 6. 1. ~ 2026. 6. 21.(20일간) /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2. “충전시설”이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3. “전용주차구역”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내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.
4. “관계인”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(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)를 말한다.
5. “안전시설”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장비 등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보급촉진계획 수립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

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5조(재정 지원)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
2.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
3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, 지원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2. 「울산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」에 따른 중구 청사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충전시설의 보급 확대)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·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

허가(이하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제8조(충전시설의 안전 확보) ① 구청장은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1.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(열화상 카메라, 불꽃감시 카메라 등)
2. 소화설비(상방향 직수장치, 이동식 수조, 질식 소화포, 전용소화기 등)
3.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

제9조(홍보 등)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 등)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「울산 광역시
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근거법규

□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8조의2(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·공급·판매 또는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
2.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·생산을 위한 연구·조사
3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3(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(충전과 방전을 말한다)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제12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·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2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
3.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,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

4.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3. 작성자

- 소 속: 환경위생과
- 직 급: 지방세무주사
- 성 명: 진선영
- 연락처: (052)290-3711